

## 제16장 일반규정 및 예외

### 제16.1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제16.2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정보를 받는 당사국은 정보의 공개가 당사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명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제16.3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sup>1</sup>

---

<sup>1</sup>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8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0장(통신 서비스), 제11장(투자) 및 제12장(디지털 무역)<sup>2</sup>의 목적상, GATS 제14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sup>3</sup>

#### 제16.4조

##### 안보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2) 무기, 탄약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군사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3) 통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sup>4</sup>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 또는

4) 국내적 비상시,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하는 조

---

<sup>2</sup> 이 항은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sup>3</sup>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sup>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공공 또는 민간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현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제1항나호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와 그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 제16.5조

###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8.3조(내국민 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 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나. 제8.3조(내국민 대우), 제8.4조(최혜국 대우), 제11.4조(내국민 대우) 및 제11.5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 유산취득, 증여 그리고 세대를 건너 뛴 이전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 다. 제12.18조(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는 특정 디지털 제품의 구입 또는 소비와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기업의 과세 가능한 소득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디지털 제품의 구입 또는 소비와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디지털 제품을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가호, 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라.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 마.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및 그 개정
- 바.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5.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제11.10조제2항, 제11.10조제3항 및 제11.10조제4항(이행요건)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6. 제11.8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1.8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1.8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려는 투자자는, 제11.18조(중재 청구 제기) 제2항에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 그 과세 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해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에 동의했으나 회부부터 6개월의 기간 내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11.18조(중재 청구 제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7.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나. 세금과 과세조치는 제1.2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2) 말레이시아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장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